제1633호
2019. 12. 12.(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조 례

제2019-제14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2019-제14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2019-제14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10
제2019-제14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제2019-제14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16
제2019-제14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2019-제14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2019-제14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22
제2019-제148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제2019-제14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다음장에 계속]

공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차 례

제2019-제148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2019-제14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제2019-제14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36
제2019-제14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40
제2019-제14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2019-제14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2019-제14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규 칙
제2019-제8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8
제2019-제8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76
◎ 공 고
제2019-제1343호: 동작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선정 결과 공고---------- 80
제2019-제13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80
◎ 인사발령 ---------- 81

조 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목 “(국장·단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단장의 직급”을 “국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 중 제목 “(국·단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본문 중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을 “기획조정국, 생활환경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재난담당관: 안전·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CCTV 통합관제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재난담당관: 안전·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정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1. 행정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3. 구정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내의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활환경국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7.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8.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소음·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9.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스·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2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4.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5.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6.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버스·택시·화물 인·면허, 정비업소관리, 시설관리
28. 자동차등록세에 관한 사항
29.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
30.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31.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관리
32. 버스전용차선, 법규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 및 일자리 시설,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9. 물품수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출·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회계검사·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2.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3. 지방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14.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의 총괄
16.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
19. 주민세, 법인에 관한 시·구세에 관한 사항
20.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계획 수립·조정업무
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한부모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9.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1.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12. 건축업자 지도감독
13.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17. 지하도·지하공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8.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9.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0.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1.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2.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신고·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지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전·동행정에 관한 사항
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8.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9.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전시운영계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4.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체육시설업의 신고·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16.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18.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19.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0.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3.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4.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5.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26.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8.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29.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0.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31.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32.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조정국"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에 마목)을 "보건소"로 한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생활환경국"으로,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마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4호 중 "국장·소장·단장 및 과장"을 "국장·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인력·재정동원지원반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통신·전산지원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홍보지원반 "홍보 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제6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문화팀장"을 "문화관광팀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⑳「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㉑「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㉒「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 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㉔「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㉕「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 과장”으로 한다.

㉖「서울특별시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 환경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기획 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㊼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㊽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고용팀장"을 "자활주거팀장"으로 한다.

㊿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을 "복지 국장,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을 "기획조정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 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을 "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 과장"으로 하고, 제17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6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6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㊹「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㊺「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㊻「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㊼「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㊽「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㊾「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㊿「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51)「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폐지(정규기구 편입)에 따른 1국 신설 등 기구 개편

- 폐지 : 미래비전전략기획단(한시기구)
- 신설 : 기획조정국

나. 과 신설·통합

- 신설 :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 통합 : 전략사업과 ⇐ 행정타운조성과 + 도시전략사업과

다. 명칭변경

라. 국 소속부서 변경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22명”을 “1,3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95명”을 “1,307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34	1,33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29(1)	1,329(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3(1)	36(1)	2	10	15
6급 이하 계	1,255	1,25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4**	**4**			
6급상당 이하계	4	4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 1,334명 (1,322 → 1,334명, 증 12명)
- 일반직 계 : 1,329(1)명 (1,317(1) → 1,329(1)명, 증 12명)
- 5급 계 : 63(1)명 (61(1) → 63(1)명, 증 2명)
- 6급이하 계 : 1,255명 (1,245 → 1,255명, 증 10명)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
9.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
2.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
3. 통장연합회 회원
4.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 공개 및 보존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2.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4.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등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장애인 □ 치매환자 □ 정신질환자 □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분야	□ 전기 □ 가스·보일러 □ 소방 □ 안전용품 보급 □ 기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환경 안전점검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재난·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기에 위험요소를 완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안전점검 등 지원 신청 및 사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분야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안전점검 등 사업의 홍보(안 제10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5. 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공공기관
6.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협력 등)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화재 발생 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아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최대한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안 제3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사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홍보(안 제4조)

다.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안 제5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며,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각종 예산낭비 사례, 예산 절감 아이디어·수입 증대방안 등 공무원 및 구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음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안 제5조)

라. 예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안 제6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존속기한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기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서울 특별시동작구”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해당 재산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사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

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금고”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45조 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 중 “서울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물품 무상대부) 영 제75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작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동작구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89조의2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별표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중 “10만원 이상의”를 “50만원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문 신설 (안 제29조제4항)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무상대부 가능 조문 신설(안 제65조의2)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건물대부료 산출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안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비소모품 및 소모품 금액기준 상향(안 별표2)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 안정
사. 청년의 문화 향유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차. 청년의 건강 증진

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기록되고 공개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정책의 추진

제1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예술 사업 개발 및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휴학·졸업을 한 청년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제19조(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장 예산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청년정책 지원사업, 청년시설의 운영, 청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 제정이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의 자립기반의 형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초조사 등(안 제5조~제6조)
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4조)
다.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16조)
라.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안 제20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 클러스터”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2. “스타트업·벤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나.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 “4차 산업기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교육·일자리·미래 성장 동력·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구 소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 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
2. 산학 클러스터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스타트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4. 스타트업·벤처기업 역량 강화
5. 스타트업·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산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 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청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지구로 지정·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력촉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
2.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4.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제 운영
5.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타트업·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구청장, 스타트업·벤처기업 관련 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구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임직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5.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분야별 계획·사업 등을 심의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준용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원의 동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관내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역안착을 통해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안 제5조)

나. 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안 제6조)

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안 제7조)

라.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마.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안 제10조 ~ 제18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출자 및 투자유치 지원”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에 “출자”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기금의 용도에 출자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는 100분의 50)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법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5조의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전환,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 단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안 제6조)

다. 식품 관련 기관 등으로의 민간위탁(안 제7조)

라. 예산의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안 제9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교육 지원 사업
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소 및 위치, 개관연원일
2. 교원자격, 시설규모, 학생 수 등 교육여건
3. 자산의 총액
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

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위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장(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0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자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내 미혼모자가족의 실태조사
2.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

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자가족의 정서·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
6.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자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현재 미혼모·부 대다수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려는 미혼모·부에 대한 편견을 불식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라.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8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모로”를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여야 할 자가”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신청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요건 미충족 시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신청 규정 명확화
- 신생아가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명시(안 제3조제1항)
-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명시(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나.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시 별도 신청요건 조항 마련(안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 하도록 하며 또한”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분석평가하여”를 “평가 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성장과”를 “성장과 돌봄 및”으로 한다.

제8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를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양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양성평등 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주민, 단체, 여성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 (여성·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여성기업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5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49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0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51조(조성계획의 실행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공무원 및 구민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 동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53조(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 여성 1인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제6장제50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며, 성비에 따른 기계적 대등이 아닌 남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양성평등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신설 (안 제24조의2)

다.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명시(안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조성 기준, 조성 계획의 실시 (안 제49조~제51조)

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 명시(안 제52조)

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항 마련 (안 제53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12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 협의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안 제6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촉규정 마련(안 제7조의2)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안 제20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전년도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안 제22조, 안 제24조의2)

규 칙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건소의 과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장 구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구·동 감사실시
2. 공직자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3. 감사·조사결과 집행전말의 관리
4. 각종 정보수집, 분석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진정·정보사항 처리
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6. 구청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의 처리
7. 공직자의 재산등록 접수·관리
8. 청원·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
9. 전화·서면·통신 등 각종 신고민원 접수처리
10. 민원심의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등
11. 계약원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2. 직소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13.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4.「산업안전보건법」관련 업무 총괄

15.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3조의2(안전재난담당관) ① 안전재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안전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 통합관리
2. 재난관리 기획, 동원계획 및 운영 총괄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해대책 상황실 유지 관리
5.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영
6.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
7.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8.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지도
9.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리
11. 안전관리자문단 관리
12.「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사항
13.「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사항 총괄
14.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
15. 응답소 현장민원 총괄 관리
1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건축허가 시 구조·피난 및 방화·설비기준에 관한 협의
18. 건축인·허가/착공(공사 포함)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지원/점검
가. 지하1층 이상 굴토공사 또는 인접대지에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경우 등
나. 기타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공사
19. 안전등급 D급 이상 노후건축물 및 급경사지 등 점검 및 관리
20.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21.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2. 건축물 화재 및 지진 관련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가. 공공/민간 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내진성능 실태조사·관리
나. 드라이비트 외벽시공 등 취약건축물 조사·관리(DB화)
다. 기타 건축물 화재 및 지진관련 필요한 사업, 기술지원
2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제2절 기획조정국

제4조(기획조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과장, 홍보과장, 미래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기본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2.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총괄
3. 회의자료 작성 및 위원회 총괄 관리
4. 사무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무이양 및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자료실 관리 운영
7. 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8.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9.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10.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예산 조정
11. 시설관리공단 사업승인·보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설관리공단 각종 규정 제·개정(안) 검토
13.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실적 관리
14. 혁신업무 총괄·조정
15.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동작구협치회의 및 민관협치네트워크 구축·운영
17.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 총괄·조정
18.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9. 구 시책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20.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1. 자치법규, 훈령·고시·공고 및 예규의 심사
22. 법규의 편찬 및 발간
2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4.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매체 활용 홍보
3.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배포
4.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8. 공고·고시·구보발간
9. 언론매체 홍보
10.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13. 인터넷, 전자매체, 모바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14.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5.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17. 구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7조(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운영
10 통합보안 관제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
11.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12. 소속기관의 전산화 추진
13. 자가 광통신망 운영
14. 정보통신실, 사이버침해센터 운영
15. 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산교육장 관리
16.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8. 각종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0.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1. 구내 정보통신망 및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타운 건립 총괄기획·조정, 투자심사관리
2. 현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3. 현청사의 매각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물 신축(설계·시공·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행정타운 조성 관련 용역 등 건축분야 업무 전반
7. 행정타운건립 부지의 토지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8. 행정타운조성 참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방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양녕주차장 청년임대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7. 흑석동 유수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9. 사당권 공공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0. 대방동 군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절 생활환경국

제9조(생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청소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관리
3. 예산. 회계 및 세외수입 현계 총괄
4. 자원회수시설 참여계획 수립·시행
5.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시행
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7. 환경미화원 인사·복무 및 임금·후생복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허가·계약업무 운영 관리
9. 적환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 관리
1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1. 지역·가로 청소작업 및 안전관리
12.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수립 시행
1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시행
14. 재활용센타, 교환소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리
15.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및 유지관리
16.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기금관리
17.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
18. 적환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9. 차량운전원·정비원 관리, 차량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
20.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21.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체 지도감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유지 관리
22. 오수처리시설은 과태료 부과·징수
2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가로행정과) 가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하천, 구거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 발급
5.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 추진
7.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8. 도로 임시점용 허가
9.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의 디자인기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2. 배출시설 설치허가
3.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배출부담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7.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
8.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
1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업무
12. 수질오염 방지업무
13.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
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1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17.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
1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9.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20. 전문건설업(특정열기자재시공업,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
21. 전기공사 및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감독
22. 전기용품 단속
23.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수급 지도감독
24. 가스사용시설 신고에 따른 지도감독
25.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2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27. 이륜차정기검사 업무
28. 석면관리 업무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29.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

30.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1. 에너지 절약 및 지원,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관한 사항
32.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33. 인공조명에 의한빛 공해 방지업무 (적용대상 조명별 설치 및 신고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
34. 환경정보 공개 업무

제13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
2. 시설공원 관리 및 공원 내 각종 동상기념물 등 유지관리
3. 공원녹지 점·사용 허가
4. 공원시설 관리위탁 허가
5.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식재 유지관리
6.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수벽수림대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8.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조경계획 협의
9. 꽃묘 식재 및 관리
10. 공원녹지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13. 공원 및 임야내 불법 건축물 관리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14. 사방조림사업 및 육림지도
15. 임야절개지 및 임야내 위험시설물 관리
16. 약수터 관리
17.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18.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
19.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20. 조수보호 및 수렵의 지도
21.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22. 체육공원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3. 공원내 체육시설, 매점 등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제14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총괄(특별수송 및 수송동원)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3. 사업용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 신고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사항
5. 개인택시 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
6. 화물취급소 창고업 인·허가
7.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록
8. 교통량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 평가)
9.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개선사업

10. 교통안전대책(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학교안전지구개선 등)
11. 교통소통 촉진대책(정체지점 개선 사업 등)
12.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택시승차대 관리
13. 버스 전용차선 설치
14.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
15.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7.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검사 및 정비 명령
19.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20. 자가용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
21. 자동차 등록번호표 변경 및 재교부
22. 이륜자동차의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5. 건설기계(중기)등록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5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영주차장 각종 신고처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5. 주차단속원 지도 감독
6.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
7. 주차위반 견인 및 장기미반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상업소 지도감독 및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
9. 무적·사업용차량 법규위반단속 및 처분
10.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정비업체 지도 단속
1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자동차 대여사업체 관리 감독
13. 폐차장운영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14.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및 유상운송허가
15. 버스전용차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17. 교통불편신고 민원 사항
18.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9. 운수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0.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 포함)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2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23. 담장 허물기 사업

제4절 일자리경제국

제16조(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발굴·관리업무 총괄
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관련 인센티브 및 공모에 관한 사항
4. 동작직업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
6.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10.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동작50+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뉴딜일자리에 관한 사항
18. 직업소개소 등록·변경·점검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일자리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발굴 ·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지원 및 소자본 창업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
9.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11. 전통시장 안전관리

12.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3.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4. 대부업에 관한 사항
15. 담배 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계량기 검사 및 불법계량행위 단속
18. 농업 및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19. 도·농간 교류(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
20.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21. 비료 및 농약
22. 양곡유통 및 관리
23. 농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4. 복권판매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관 지정
4.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5.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 등
8.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9.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0.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11.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12. 물품관리 및 공사, 물품입회
13. 지출종합계획의 수립·조종 및 자금관리
14. 지출 총괄 및 세입세출의 결산
15. 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6. 원천징수 납부
17. 지출증빙서 관리
18. 수입중지에 관한 사항
19. 지출계산서의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21. 구 금고에 관한 사항
22. 자산 및 부채 관리
23. 회계업무 처리
24. 회계 결산

제20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분석·평가
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3. 시금고 지도감독 및 수입금의 경정 의뢰
4.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에 관한 사항
5. 소인, 과오납, 환불, 충당, 계좌경정, 감액정리
6. 지방세 징수부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7.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8. 체납자동차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
9.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10.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1.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12.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결정
13. 체납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
14.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15.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정산
16. 결손처리
17. 체납업무 전산관리 총괄(현계·체납·전산자료 대사확인)

제21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수립·시행 및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세원발굴 및 연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8.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9. 토지·건축물 과세표준의 정비 및 관리
10.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1.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2.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3.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4. 지방세 심판·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5.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8. 유공납세자 선정 및 관리

제22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

2.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3.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건설기계 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6.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7. 세원발굴 및 연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8.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9.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0. 지방세 심판·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1.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2.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괄 분석·평가
13.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작성
14.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합 편성
15.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금년도 체납 징수관리(재무과, 가로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 및 특별회계 제외)
16. 세외수입 수수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개정 및 협의
17. 세외수입 연감 작성
18. 세외수입 부서 교육 및 지도 점검

제5절 복지국

제23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관련 전산망 구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자원발굴·동원·연계·관리 및 기관연계 구축업무
9.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결정 및 통지
10. 이웃돕기사업,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11. 긴급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2.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4. 동작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사·납골·장례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등 노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9. 노인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대책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관리에 관한 사항
15. 동작휴양소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시설, 단체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제26조(보육여성과) 보육여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영유아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시행
4. 여성 인력 개발 및 단체지도, 육성
5. 여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6. 여성 자원봉사 활동 육성, 지원
7.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
8.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9.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0.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업무 추진
11.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지원

제27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법인, 시설 아동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3. 청소년 사회교육 및 청소년 관련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비행, 폭력 예방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5.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예방
6. 일반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8. 저출산 관련 업무
9. 결혼중개업 관련된 사항
10. 아동수당 관련 업무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업무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활지원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자활후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초생활보장기금,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8. 자활장려금에 관한 사항
9. 영구·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10.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1.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사상자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
15.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
16.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지원
17.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지원
18.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건설국

제29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및 하자보수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택관리업 등록관리
7. 주택관리사(시험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8.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9.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0.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2. 감리자지정(사업계획 승인) 업무 관련 사항
13. 임대주택 수급 계획 수립
14. 구 자체 임대주택 총괄관리
15.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정비 및 진정처리
16. 건축철거민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17. 항측업무
18.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 및 준공 검사(다만,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3. 도시관리계획 입안(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된 사항에 한함)
4.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공고
5. 사도 개설 허가
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한함)
7.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위임된 사항에 한함)
8.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와 실효 고시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11.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범죄예방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관리
13.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제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자인협정의 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 운영 ·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18. 공공디자인의 기획(연구, 개발) 등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

제32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위험건축물 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3. 재개발지구내 시유재산 관리
4.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 인가
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7.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8. 주택재개발사업 환지 촉탁등기
9. 주택재개발비 환수 및 저당권 해지
10. 뉴타운사업(재건축 제외)에 관한 사항
11.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3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등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건축관계 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
4.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7. 정화조 설치 및 사용검사 보고
8. 일반건축물의 위험건물 및 시설물 관리
9.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11.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 동청사, 공공복지시설 및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 건물 신·증개축 등
14.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사장 관리·사설 위험시설물 총괄
16.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제34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4. 도로대장 관리
5. 도로(뒷골목 포함)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6. 도로시설물 성능개선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7.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 및 실시
8.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비의 부과징수
9. 지하도, 지하과장, 터널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
10. 지하도, 터널의 청소 등 환경정비
11. 도로시설물(지하도, 육교, 옹벽 등) 안전점검 업무

12. 도로시설물 대장 관리
13.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시행
14. 가로등, 보안등 시설동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15.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도감독
16.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17. 도로조명시설대장 관리

제3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심사분석 시설계획 및 예산업무
2. 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업무
3. 수방대책 및 하천유지관리
4. 시설공사설계 및 감독관리
5. 하수도 관리업무(통계, 대장, 하수관망도 등)
6.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하자점검
7. 유수장애시설물, 하수도 계측장비관리, 배수관련 설비업무
8. 비관리청 하수도 관련 협의
9. 기동반 보수자재, 환경순찰, 견문, 전화민원 관련 업무
10.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신고, 허가 및 출수량 사정업무
11.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12.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및 다량 사용자 관리
13. 하수도 사용료 경정 및 체납관리
14.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15. 지하수 관리(개발, 이용, 허가 등)
16. 지하수 수질검사, 계측기관리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17.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시정, 폐쇄, 원상복구 명령
18. 지하수법 및 조례 위반자 조치
19.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제7절 행정국

제36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체육문화과장, 교육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차량 관리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4. 예비군 구청소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5.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도
6. 구청장 의전에 관한 사항
7.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관한 사항
8. 의회·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인사행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조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8.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19.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23.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5. 조직일체감 훈련 등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6. 직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7. 직원 체력단련실 및 솔향기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9. 구민회관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2. 구.동의 행정구역 · 통반조직 및 운영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사항
4. 취학 그 밖에 학무
5. 행정사 신고관리
6. 주민등록 및 인감
7. 구민상 및 모범유공구민 표창
8. 반상회 운영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11. 자치회관 운영지도 및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12.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사항
1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15. 문화시민운동 계획 수립 및 추진
16. 사회단체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총괄
18.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19.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20.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21.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22.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3.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 및 동원훈련 실시
24.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및 관리
25. 사회근무요원 종합관리
26.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7.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방범용 CCTV 관련 업무
29.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3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추진
3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32. 공유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9조(체육문화과) 체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체육 진흥·지원 및 협조
2.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3.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
4.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5. 체육시설업의 허가·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6. 구립체육시설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7. 구립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 업무
9.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0. 구 직영 및 위탁 생활체육교실 운영
11. 직장 운동 경기부(동작구 씨름단) 운영
12.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3.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15.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
16. 문화재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
17.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8. 지방문화재,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19.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게임물, 영화업 등에 관한 사항
20.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21. 문화재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22. 여가·레저 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전통사찰 보존관리

제40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2.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
4.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및 관리
5. 우수학교 유치
6. 혁신교육지구사업 공모 및 추진
7. 영어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현황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12.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13.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건립 및 위탁운영·관리
15.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관리
16.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사항
17.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9. 동 마을문고 운영 및 관리

제4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동 민원업무 행정지도
4.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현장 민원실 운영
6. 문서수발 및 우편물 처리
7.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8. 건축민원 등 접수처리(즉시 민원)
9. 외국인 등록
10. 모사전송 민원접수 처리
11.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1회 1방문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13. 제적부 관리
14.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교합
15.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

16. 인구동태
17. 신원조회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19.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20. G4C(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
21. 인감증명 발급
22. 수렵면허 신고 처리
23. 여권업무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4. 여권관련 국비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5. 여권 전산망 및 전산장비 관리
26. 여권발급 신청접수
27. 여권발급 심사
28. 여권관련 제신고 접수처리
29. 여권 발급 및 교부
3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운영
3. 건축물대장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
5. 계약서 검인 업무
6. 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
7.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
8. 소유권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9. 대행법인 지도 감독
10. 토지기록 전산업무(통계, 논리오류 등)
11. 측량성과 검사
12. 등기필 및 소유권변경 정리
13. 토지이동 처리(공유토지 포함)
1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1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16.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17.「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사업신고에 따른 조치
18.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도시계획도 관리 및 제증명 발급
20. 지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22.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추진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43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보건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보건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
2. 보건통제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문서·보안·관인관수·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6. 건강진단서 필증 및 제증명발급
7.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8.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9.「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중 급성 및 만성 감염병에 관한 사항
10. 급성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5. 보건분소 운영
16.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18.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20. 건강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21. 구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2.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단속
4.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5. 식중독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7.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8.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
9.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0. 부정, 불량식품 단속
11.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감독
12. 영업시간 위반, 퇴폐.변태 등 감시단속
13. 위생법규위반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14. 무허가업소 정비 및 관리
15.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및 이전폐쇄 관리
16.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17.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농·축·수산물 원산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명예감시원 활용계도·홍보
21. 축산 · 동물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토피·천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허가 및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임산부·영유아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6.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건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료법」시행에 관한 사항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4.「혈액관리법」시행에 관한 사항
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6.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8.「약사법」시행에 관한 사항
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10.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2. 1차진료, 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6.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7. 대사증후군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20.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암환자 관리사업 중 암 조기검진사업
2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동

제4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46조(분장사무) 동주민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복무관리 및 보안·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3. 통·반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해촉
4.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에 관한 사항
5.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신청, 변경사항 등에 관한 상담 및 접수
9.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0. 지역주민 복지조직화, 복지자원 발굴
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12. 동 체육회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전산에 관한 업무
1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8.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19.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시장 및 대규모 점포 수습주무부서를 “생활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사이버 안전 관리 수습주무부서를 “홍보전산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대형광고물 수습주무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가로행정과”로, 정보통신 마비 수습주무부서를 “홍보전산과”에서 “미래도시과”로, 유통마비(농수산물, 생활필수품) 수습주무부서를 “생활 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산업시설 생산마비 수습주무부서를 “생활경제과” 에서 “경제진흥과”로, 어린이안전 수습주무부서를 “보육여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노인안전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장례식장 안전관리 수습주무부서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 로 한다.

별표4 중 1.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일자리경제 담당관”을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나. 비상1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다.비상2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2.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나.비상1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며, 다.비상2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

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별표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편성기준 실무반 2)협업기능반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다)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를 “미래도시과”로,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차)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 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 및 보건소장”을 “기획조정국장·생활환경국장·일자리경제국장·복지국장·도시건설국장·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 으로, 제8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제25조제2항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자치법규안의 작성 서식 가. 표지 중 “기획예산과장 심사필”을 “기획조정과장 심사필”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소·단장, 과·동장(담당관·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국·소장, 과·동장(담당관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내부위임사항 중 “일자리 경제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기획재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 으로,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송무용전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일자리경제국장·복지국장·도시건설국장·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중 물품관리 총괄관(보조총괄관)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마목, 사목, 자목, 카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기획 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 조정과장" 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을 “생활환경국”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폐지(정규기구 편입)에 따른 1국 신설 등 기구 개편

- 폐지 : 미래비전전략기획단(한시기구)
- 신설 : 기획조정국

나. 과 신설·통합

- 신설 :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 통합 : 전략사업과 ⇐ 행정타운조성과 + 도시전략사업과

다. 명칭변경

라. 국 소속부서 변경

마. 기타 팀 통합·이관 등에 따른 업무 조정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1,334	854	27	116	337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329	850	26	116	337
3 급 소 계	1	1			
부 이 사 관	1	1			
4 급 소 계	8	6	1	1	
서 기 관	4	3	1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기 술 서 기 관	2	1		1	
5 급 소 계	63	36	2	10	15
행 정	40	23	2	1	14
의 무	6			6	
시 설	4	4			
행정또는사회복지	4	3			1
행 정 또 는 녹 지	1	1			
행정,보건,간호 또는 의무	2			2	
행 정 또 는 시 설	4	4			
행 정 또 는 별 정	1	1			
의 무 또 는 약 무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6 급 소 계	265	193	5	18	49
행 정	168	120	5	4	39
세 무	16	16			
사 회 복 지	11	5			6
공 업	7	7			
녹 지	2	2			
의 료 기 술	1			1	
약 무	2			2	
간 호	3			3	
보 건 진 료	2			2	
시 설	19	19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3			3
행 정 또 는 세 무	2	2			
행 정 또 는 전 산	1	1			
행 정 또 는 사 회 복 지	3	2			1
행 정 또 는 공 업	2	2			
행 정 또 는 녹 지	2	2			
행 정 또 는 보 건	3			3	
행정,환경,보건또는공업	1	1			
행 정 또 는 시 설	7	7			
보 건 , 공 업 또 는 환 경	1	1			
보 건 또 는 의 료 기 술	1			1	
간 호 또 는 보 건	2			2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7 급 소 계	410	278	10	37	85
행 정	236	155	5	9	67
세 무	28	28			
전 산	2	2			
사 회 복 지	34	17			17
속 기	4		4		
방 호	1	1			
공 업	12	12			
녹 지	3	3			
수 의	1			1	
보 건	6			6	
식 품 위 생					
의 료 기 술	3			3	
약 무	2			2	
간 호	14			14	
환 경	3	3			
시 설	35	35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3	2			1
운전	8	6	1	1	
행정또는전산	1	1			
녹지또는시설	1	1			
보건또는간호	1			1	
시설또는방재안전	2	2			
전기운영	4	4			
기계운영	3	3			
8급소계	371	219	4	42	106
행정	151	99	2	3	47
세무	24	24			
전산	3	2		1	
사회복지	62	19			43
공업	10	10			
녹지	4	4			
보건	9	2		7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간호	20			20	
환경	1	1			
시설	26	26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3		1	
운전	17	2	1	3	1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6	4			2
행정또는시설	4	4			
녹지또는시설	2	2			
시설또는공업	1	1			
시설또는방재안전	4	4			
사무운영	12	8		1	3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9급소계	209	115	4	8	82
행정	77	40	4	2	31
세무	4	4			
전산	1	1			
사회복지	51	4			47
공업	6	6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3			3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환경	1	1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3	3			
운전	25	23		1	1
행정또는전산	2	2			
행정또는사회복지	7	4			3
시설또는방재안전	1	1			
전문경력관소계	2	2			
나군(화생방)	2	2			
별정직계	4	3	1		
6급상당소계	1	1			
일반비서	1	1			
7급상당소계	3	2	1		
수행비서	3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총 정원을 1,322명에서 1,33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사회 복지직 승진 적체 해소 및 일부 기능쇠퇴 분야 정원 상계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1,334명, 12명 증 (구본청 842→854명)
- 일반직계 : 1,329명, 12명 증 (구본청 838→850명)
- 5급 소계 : 61→63명, 2명 증 (구본청 34→36명)
- 6급 소계 : 262→265, 3명 증 (구본청 190→193명)
- 7급 소계 : 406→410명, 4명 증 (구본청 276→278명, 동 83→85명)
- 8급 소계 : 363→371명, 8명 증(구본청 218→219명, 동 99→106명)
- 9급 소계 : 214→209명, 5명 감 (구본청 111→115명, 동 91→82명)

공 고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9 - 1343호

동작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선정 결과 공고

『동작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법인명	소재지	위탁기간
동작복지재단 (대표 :유제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2020.1.1. ~ 2021. 12. 31. (2년)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9 _ 13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2. 12. ~ 1. 2.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대

연 번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명령사유
1	서울47고5259	**라비타**	박*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인사발령

[발령 제239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송 시 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12월9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상도제4동	지방행정주사보

2019. 12. 9. 字.

[발령 제240호]

가. 신규임용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임은정**	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운동처방사)에 임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12.9.~2021.12.8.)	신	규

2019. 12. 9.字.

[발령 제241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미 경**	복직을 명함 대방동 근무를 명함	행 정 국	지 방 행 정 서 기

2019. 12. 12. 字.

동작구보 제1633호 동작구

제1633호 구 보 2019.12.12.(목)



www.dongjak.go.kr

동 작 구